

1●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497호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91호(2018.12.14.)로 지구지정된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포천시 도시정책과(031-538-2556)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96-415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이동교리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384,197㎡

(변경) 383,036.7㎡ (감 1,160.3㎡,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기정	박 상 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경	직무대행 이 정 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84,197	감) 1,160.3	383,036.7	1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279,716	279,716	73.0	
	일반주거지역	-	증) 220,239	220,239	57.5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0,046	40,046	10.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80,193	180,193	47.0	
	준주거지역	-	증) 59,477	59,477	15.5	
상업 지역	소 계	-	증) 22,413	22,413	5.9	
	일반상업지역	-	증) 22,413	22,413	5.9	
녹지 지역	소 계	208,563	감) 127,655.3	80,907.7	21.1	
	자연녹지지역	95,943	감) 15,035.3	80,907.7	21.1	
	생산녹지지역	112,620	감) 112,620	-	-	
도시지역(미지정)		175,634	감) 175,634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계		-	-	383,036.7	-	-
-	포천시 소흘읍 일원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미지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40,046 180,193 59,477 22,413 80,907.7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예정지적좌표 측량 결과 반영 및 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이동교리 일원	384,197	감)1,160.3	383,03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91호 (2018.12.14.)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이동교리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면적 : 384,197→383,036.7m ² (감 1,160.3m ²)	•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이동교리 일원

다. 면 적 : 383,036.7㎡

라. 계획의 목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직무대행 이 정 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2018. 12. 14. (지구지정 고시일) ~ 2026.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383,036.7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55,965	40.7		
	단독주택	2,707	0.7		
	근린생활시설	2,819	0.7		
	공동 주택	소 계	150,439	39.3	
		공공지원민간임대	98,468	25.7	
		공공임대	20,953	5.5	
	민간분양	31,018	8.1		
판매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57,182	14.8		
	준주거용지	6,564	1.7		
	상업시설용지	12,787	3.3		
	업무시설용지	8,928	2.3		
	주상복합시설	25,805	6.7		
	도시지원시설	3,098	0.8		
기반 시설 용지	계	169,889.7	44.5		
	공원 녹지	소 계	89,572	23.5	
		공원	10,555	2.8	근린공원 1개소
		녹지	27,530	7.2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11개소
	하천 유수지 보행자도로	하천	45,283	11.8	
		유수지	6,010	1.6	1개소
		보행자도로	194	0.1	10m이상
		초등학교	11,280	2.9	1개소
		유치원	2,680	0.7	1개소
	주차장	주차장	2,432	0.6	2개소
		소계	63,925.7	16.8	
도로		도로	62,086.7	16.3	하천중복면적 제외 (3,909㎡)
	보행자도로	1,839	0.5	10m미만	

5.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계획인구 : 9,379인

나. 주택건설계획 : 3,716호

구분	면적(m ²)	주택규모(m ²)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78,951	-	3,716	9,379	-
단독주택	2,707	-	12	33	-
공동주택	150,439	-	3,212	8,018	-
공공지원민간임대	98,468	-	1,901	5,133	공공지원 민간임대
60m ² 이하	23,436	80	570	1,539	
60m ² ~ 85m ²	75,032	110	1,331	3,594	
공공임대	20,953	56	748	1,365	통합공공임대
민간분양	31,018	110	563	1,520	민간분양
주상복합	25,805	110	492	1,328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기정	3	1,356	25,190	-	-	-	-	-	3	1,356	25,190
	변경	14	3,405	67,834.7	3	740	14,610	4	1,168	18,656	7	1,497
대로	기정	2	686	17,150	-	-	-	-	-	2	686	17,150
	변경	3	924	23,754	-	-	-	-	-	3	924	23,754
중로	기정	1	670	8,040	-	-	-	-	-	1	670	8,040
	변경	7	2,156	36,814	2	721	14,420	4	1,168	18,656	1	267
소로	기정	-	-	-	-	-	-	-	-	-	-	-
	변경	4	325	2,026	1	19	190	-	-	3	306	1,836
가각등	5,240.7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증) 2,432	2,432	-	
신설	38	주차장	주차장	송우리 461 일원	-	증) 1,400	1,400	-	
신설	39	주차장	주차장	송우리 482-1 일원	-	증) 1,032	1,032	-	

나.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	증) 10,555	10,555	-	
신설	67	공원	근린공원	초가팔리 320-3 일원	-	증) 10,555	10,555	-	

2)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개소		-	증) 27,530	27,530	-	
소 계			4개소		-	증) 6,459	6,459		
신설	52	녹지	완충녹지	송우리 483-8 일원	-	증) 3,167	3,167	-	
신설	53	녹지	완충녹지	초가팔리 348-49 일원	-	증) 1,284	1,284	-	
신설	65	녹지	완충녹지	초가팔리 348-72 일원	-	증) 1,282	1,282	-	
신설	66	녹지	완충녹지	초가팔리 345 일원	-	증) 726	726	-	
소 계			11개소		-	증) 21,071	21,071		
신설	55	녹지	경관녹지	송우리 482-4 일원	-	증) 1,203	1,203	-	
신설	56	녹지	경관녹지	송우리 479-4 일원	-	증) 1,541	1,541	-	
신설	57	녹지	경관녹지	초가팔리 348-81 일원	-	증) 287	287	-	
신설	58	녹지	경관녹지	송우리 473-1 일원	-	증) 2,842	2,842	-	
신설	59	녹지	경관녹지	송우리 468 일원	-	증) 3,318	3,318	-	
신설	60	녹지	경관녹지	송우리 641-149 일원	-	증) 1,700	1,700	-	
신설	61	녹지	경관녹지	송우리 118-3 일원	-	증) 924	924	-	
신설	62	녹지	경관녹지	초가팔리 309-14 일원	-	증) 5,970	5,970	-	
신설	63	녹지	경관녹지	초가팔리 299-2 일원	-	증) 3,029	3,029	-	
신설	67	녹지	경관녹지	초가팔리 307-1 일원	-	증) 226	226	-	
신설	68	녹지	경관녹지	초가팔리 279-9 일원	-	증) 31	31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증) 13,960	13,960	-	
신설	58	학교	초등학교	초가팔리 348-48 일원	-	증) 11,280	11,280	-	
신설	59	학교	유치원	초가팔리 348-21 일원	-	증) 2,680	2,680		

라. 방재시설

1) 하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중점	주요 경과지					
기정	17	포천천	지방 하천	소흘읍 이동교리 632-1수	영중면 영평천 (지방) 합류점	-	29.14	최소 14 최대 198	3,123,761 (58,691)	경기도고시 제1995-203호 (1995.6.19.)	
변경	17	포천천	지방 하천	소흘읍 이동교리 632-1수	영중면 영평천 (지방) 합류점	-	29.14	최소 14 최대 198	3,123,761 (45,283)	-	도로 중복결정 (3,909㎡)

2) 우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	증) 6,010	6,010	-	
신설	6	우수지	저류 시설	초가팔리 310 일원	-	증) 6,010	6,010	-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 원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며 토양의 특성을 분석하여 표토를 사업지구내 완충·경관녹지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토양보전계획 수립
- 하천을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
- 수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친수성을 갖춘 단지로 개발
-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나. 탄소저감계획

- 지구 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구내 공공 건축물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 가로별 녹화 등을 통한 탄소 흡수 및 탄소 흡착 효과가 높은 수종 식재
- 도로, 보도, 주차장 등의 표면 투수성 포장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단열 강화 등 에너지 효율화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1](도면게재생략)

[붙임1]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84,197	감) 1,160.3	383,036.7	1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279,716	279,716	73.0	
	일반주거지역	-	증) 220,239	220,239	57.5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0,046	40,046	10.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80,193	180,193	47.0	
	준주거지역	-	증) 59,477	59,477	15.5	
상업 지역	소 계	-	증) 22,413	22,413	5.9	
	일반상업지역	-	증) 22,413	22,413	5.9	
녹지 지역	소 계	208,563	감) 127,655.3	80,907.7	21.1	
	자연녹지지역	95,943	감) 15,035.3	80,907.7	21.1	
	생산녹지지역	112,620	감) 112,620	-	-	
도시지역(미지정)		175,634	감) 175,634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계		-	-	383,036.7	-	-
-	포천시 소흘읍 일원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미지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40,046 180,193 59,477 22,413 80,907.7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예정지적좌표 측량 결과 반영 및 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이동교리 일원	384,197	감)1,160.3	383,036.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91호 (2018.12.14.)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이동교리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면적 : 384,197→383,036.7㎡ (감 1,160.3㎡)	•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	1,356	25,190	-	-	-	-	-	3	1,356	25,190
	변경	14	3,405	67,834.7	3	740	14,610	4	1,168	18,656	7	1,497
대로	기정	2	686	17,150	-	-	-	-	-	2	686	17,150
	변경	3	924	23,754	-	-	-	-	-	3	924	23,754
중로	기정	1	670	8,040	-	-	-	-	-	1	670	8,040
	변경	7	2,156	36,814	2	721	14,420	4	1,168	18,656	1	267
소로	기정	-	-	-	-	-	-	-	-	-	-	-
	변경	4	325	2,026	1	19	190	-	-	-	3	306
가각등	5,240.7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소흘4	25	보조 간선 도로	358 (117)	송우리 119-1번지 일원	이가팔리 492-4번지 일원	일반도로		포천시고시 제2010-24호 (2010.3.24.)	
변경	대로	3	소흘4	25	보조 간선 도로	358 (117)	송우리 119-1번지 일원	이가팔리 492-4번지 일원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소흘5	25	보조 간선 도로	3,082 (569)	이동교리 39-9번지 일원	가산면 방축리 889-1번지 일원	일반도로		포천시고시 제2010-24호 (2010.3.24.)	
변경	대로	3	소흘5	25	보조 간선 도로	3,082 (569)	이동교리 39-9번지 일원	가산면 방축리 889-1번지 일원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3	소홀6	27.75	집산 도로	238	송우리 485-18번지 일원	송우리 478-2번지 일원	일반도로	포천천		
신설	중로	1	소홀21	20	집산 도로	288	송우리 479-1번지 일원	초가팔리 348-70번지 일원	일반도로	포천천		
신설	중로	1	소홀22	20	집산 도로	433	송우리 464-8번지 일원	초가팔리 330번지 일원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소홀21	15.5	집산 도로	455	송우리 483-12번지 일원	송우리 479-4번지 일원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소홀22	17	집산 도로	368	송우리 479-1번지 일원	송우리 466번지 일원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소홀23	15.5	집산 도로	106	초가팔리 342번지 일원	초가팔리 348-14번지 일원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소홀24	15.5	집산 도로	239	초가팔리 331번지 일원	초가팔리 348-27번지 일원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소홀21	14	집산 도로	267	송우리 464-8번지 일원	송우리 118-6번지 일원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소홀8	12	국지 도로	670	송우리 641-99번지 일원	초가팔리 328번지 일원	일반도로		포천시고시 제2010-118호 (2010.9.27.)	
신설	소로	1	소홀21	10	특수 도로	19	초가팔리 387-14번지 일원	초가팔리 387-14번지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소홀21	6	특수 도로	70	초가팔리 387-14번지 일원	송우리 641-149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소홀22	6	특수 도로	211	초가팔리 348-28번지 일원	초가팔리 387-14번지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소홀23	6	특수 도로	25	초가팔리 345번지 일원	초가팔리 347번지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소홀4	대로3-소홀4	• 선형변경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대로3-소홀5	대로3-소홀5	• 선형변경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	대로3-소홀6	• 신설 • 폭원 : 27.75m, 연장 : 238m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중로1-소홀21	• 신설 • 폭원 : 20m, 연장 : 288m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1-소홀22	• 신설 • 폭원 : 20m, 연장 : 433m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중로2-소홀21	• 신설 • 폭원 : 15.5m, 연장 : 455m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중로2-소홀22	• 신설 • 폭원 : 17m, 연장 : 368m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중로2-소홀23	• 신설 • 폭원 : 15.5m, 연장 : 106m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중로2-소홀24	• 신설 • 폭원 : 15.5m, 연장 : 239m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중로3-소홀21	• 신설 • 폭원 : 14m, 연장 : 267m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중로3-소홀8	-	• 도로폐지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폐지
-	소로1-소홀21	• 신설 • 폭원 : 10m, 연장 : 19m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소로3-소홀21	• 신설 • 폭원 : 6m, 연장 : 70m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소로3-소홀22	• 신설 • 폭원 : 6m, 연장 : 211m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소로3-소홀23	• 신설 • 폭원 : 6m, 연장 : 25m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증) 2,432	2,432	-		
신설	38	주차장	주차장	송우리 461 일원	-	증) 1,400	1,400	-	
신설	39	주차장	주차장	송우리 482-1 일원	-	증) 1,032	1,032	-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8	주차장	• 주차장 신설(1,400㎡)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39	주차장	• 주차장 신설(1,032㎡)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	증) 10,555	10,555	-	
신설	67	공원	근린공원	초가팔리 320-3 일원	-	증) 10,555	10,555	-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7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10,555㎡)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나)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개소		-	증) 27,530	27,530	-	
소 계			4개소		-	증) 6,459	6,459		
신설	52	녹지	완충녹지	송우리 483-8 일원	-	증) 3,167	3,167	-	
신설	53	녹지	완충녹지	초가팔리 348-49 일원	-	증) 1,284	1,284	-	
신설	65	녹지	완충녹지	초가팔리 348-72 일원	-	증) 1,282	1,282	-	
신설	66	녹지	완충녹지	초가팔리 345 일원	-	증) 726	726	-	
소 계			11개소		-	증) 21,071	21,071		
신설	55	녹지	경관녹지	송우리 482-4 일원	-	증) 1,203	1,203	-	
신설	56	녹지	경관녹지	송우리 479-4 일원	-	증) 1,541	1,541	-	
신설	57	녹지	경관녹지	초가팔리 348-81 일원	-	증) 287	287	-	
신설	58	녹지	경관녹지	송우리 473-1 일원	-	증) 2,842	2,842	-	
신설	59	녹지	경관녹지	송우리 468 일원	-	증) 3,318	3,318	-	
신설	60	녹지	경관녹지	송우리 641-149 일원	-	증) 1,700	1,700	-	
신설	61	녹지	경관녹지	송우리 118-3 일원	-	증) 924	924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2	녹지	경관녹지	초가팔리 309-14 일원	-	증) 5,970	5,970	-	
신설	63	녹지	경관녹지	초가팔리 299-2 일원	-	증) 3,029	3,029	-	
신설	67	녹지	경관녹지	초가팔리 307-1 일원	-	증) 226	226	-	
신설	68	녹지	경관녹지	초가팔리 279-9 일원	-	증) 31	31	-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2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3,167㎡)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3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1,284㎡)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65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1,282㎡)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66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726㎡)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5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1,203㎡)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6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1,541㎡)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7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287㎡)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8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2,842㎡)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9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3,318㎡)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60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1,700㎡)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61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924㎡)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62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5,970㎡)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63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3,029㎡)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67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226㎡)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68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31㎡)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증) 13,960	13,960	-	
신설	58	학교	초등학교	초가팔리 348-48 일원	-	증) 11,280	11,280	-	
신설	59	학교	유치원	초가팔리 348-21 일원	-	증) 2,680	2,680		

○ 학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8	학교	• 초등학교 신설(11,280㎡)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59	학교	• 유치원 신설(2,680㎡)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4)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7	포천천	지방 하천	소흘읍 이동교리 632-1수	영중면 영평천 (지방) 합류점	-	29.14	최소 14 최대198	3,123,761 (58,691)	경기3148호 (1965.03.01)	
변경	17	포천천	지방 하천	소흘읍 이동교리 632-1수	영중면 영평천 (지방) 합류점	-	29.14	최소 14 최대198	3,123,761 (45,283)	-	도로 중복결정 (3,909㎡)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7	포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변경 • 지구내 면적 변경 - 58,691m²→45,283m²(감 13,408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포천천 변경

나)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	증) 6,010	6,010	-	
신설	6	유수지	저류 시설	초가팔리 310 일원	-	증) 6,010	6,010	-	

○ 유수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유수지	• 유수지 신설(6,010m ²)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m ²)	
계	-	2,707	-	-	2,707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R	R1	1,931	1	초가팔리 348-23 일원	201	
			2	초가팔리 348-23 일원	216	
			3	초가팔리 348-23 일원	216	
			4	초가팔리 348-23 일원	216	
			5	초가팔리 348-23 일원	216	
			6	초가팔리 348-23 일원	216	
			7	초가팔리 348-23 일원	216	
			8	초가팔리 346 일원	217	
			9	초가팔리 346 일원	217	
R2	776	1	초가팔리 346 일원	259		
		2	초가팔리 346 일원	259		
		3	초가팔리 346 일원	258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계	-	150,439	-	150,439	
A	A-1	20,953	초가팔리 282 일원	20,953	
B	B-1	31,018	초가팔리 348-20 일원	31,018	
S	S-1	45,629	송우리 479-3 일원	45,629	
	S-2	19,605	초가팔리 348-35 일원	19,605	
	S-3	33,234	초가팔리 296 일원	33,234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m ²)	
계	-	2,819	-	-	2,819	
D	D1	2,819	1	초가팔리 320 일원	709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초가팔리 320 일원	709	
			3	초가팔리 319 일원	709	
			4	초가팔리 319-1 일원	692	

라) 주상복합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계	-	25,805	-	25,805	
M	M-1	25,805	송우리 475-1 일원	25,805	

마) 준주거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m ²)	
계	-	6,564	-	-	6,564	
F	F1	6,564	1	송우리 483-8 일원	1,021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송우리 482-6 일원	1,260	
			3	송우리 482-5 일원	1,257	
			4	송우리 482-4 일원	1,457	
			5	송우리 482-3 일원	1,569	

바) 업무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m ²)	
계	-	8,928	-	-	8,928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G	G1	8,928	1	송우리 470-3 일원	4,424	
			2	송우리 470-3 일원	4,504	

사)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계	-	3,098	-	3,098	
H	H1	3,098	송우리 119-3 일원		3,098

아) 상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m ²)	
계	-	12,787	-	-	12,787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C	C1	2,236	1	송우리 119-2 일원	1,241	
			2	초가팔리 387-14 일원	995	
	C2	840	1	송우리 641-149 일원	840	
	C3	3,689	1	송우리 464 일원	1,769	
			2	송우리 464 일원	1,920	
	C4	6,022	1	송우리 469 일원	6,022	

자) 공공시설용지

○ 교육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계	-	13,960	-	13,960	
E	E1	11,280	초가팔리 348-48 일원		11,280
	E2	2,680	초가팔리 348-21 일원		2,680

○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계	-	2,432	-	2,432	
P	P1	1,400	송우리 461 일원		1,400
	P2	1,032	송우리 482-1 일원		1,032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R	R1 R2	용도	R1 (주거 전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허용 용도 R2 (점포 겸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 시설소 제외) ○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연면적의 40% 초과(2층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할 수 없으며, 1층 및 지하1층에 한함(연면적 산정시 지하층 연면적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필로티 포함)
		1획지당 가구수	○ 5가구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물의 건축선 및 배치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천시 건축조례」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배치시 채광·통풍 및 일조권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 제61조 및 「포천시 건축조례」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 1.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2.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내·외장재는 환경친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친화적 자재’라 함은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말한다. 2. ‘천연자연재료’는 건축재료로 사용한 후에도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흙, 목재, 석재, 천연직물 등이 있으며, 환경부하 저감재료도 이에 포함한다. 3.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트,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 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 지붕 및 옥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계단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옥상의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 등)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 방향으로 계획하여, 인접 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 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경사지붕 일부에 평지붕이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3.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 한다. 3.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이하가 되도록 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 B S	A-1 B-1 S-1 S-2 S-3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층)
					A-1	30% 이하	200% 이하	25층 이하
					B-1	30% 이하	200% 이하	25층 이하
					S-1	30% 이하	190% 이하	25층 이하
					S-2	30% 이하	200% 이하	25층 이하
					S-3	30% 이하	200% 이하	25층 이하
		규모 및 세대수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근린공원에서의 전망과 일조를 고려하여 학교 및 근린공원 남측의 공동주택 용지에는 층수제한구간을 지정한다. - 바람통로와 주요 조망요소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통경축을 확보해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에 배치되는 모든 주거동은 「건축법」 제61조 및 「포천시 건축조례」 제36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준용하여 일조를 확보한다. - 교육환경평가의 건축조건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한다.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의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대지경계로부터 최소 6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천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따른다. ○ 층수제한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근린공원에서의 전망과 일조 및 도로변 소음억제를 고려하여 층수제한구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p>간을 지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수제한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층수 이하로 배치하여야 하며,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따르도록 한다. <p>○ 주거동의 호수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의 주거동을 기준으로 층수에 따라 호수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구성된 주거동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8층 이하는 제한사항 없다. 2. 9층 이상, 15층 이하의 주동은 6호 이하로 한다. 3.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주동은 5호 이하로 한다. 4. 21층 이상은 4호 이하로 한다. 5. 여러 층수가 혼합될 경우는 각 주동의 최고층수 기준을 적용한다. <p>○ 주거동 1동의 길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경우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 -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내 전용면적이 60㎡ 이하로만 구성된 주거동은 길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층이하 부분 : 100미터 이하 2. 11층~15층 부분 : 80미터 이하 3. 16층이상 부분 : 60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p>○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외관디자인 등이 지붕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한다. 																
		형태 및 외관	<p>- 주거동 입면변화의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최상층부</th> <th style="width: 25%;">기준층부</th> <th style="width: 25%;">지상층부</th> </tr> </thead> <tbody> <tr> <td>10층 이하</td> <td>최상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에서부터 3개층 이하</td> </tr> <tr> <td>11층~15층 이하</td> <td>최상층에서부터 2개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에서부터 3개층 이하</td> </tr> <tr> <td>16층 이상</td> <td>최상층에서부터 3개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에서부터 3개층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0층 이하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에서부터 3개층 이하	11층~15층 이하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에서부터 3개층 이하	16층 이상	최상층에서부터 3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에서부터 3개층 이하
구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0층 이하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에서부터 3개층 이하																
11층~15층 이하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에서부터 3개층 이하																
16층 이상	최상층에서부터 3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에서부터 3개층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 층수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수 변화를 줄 경우 3개 층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과도한 층수차이에 따른 경관적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접한 주동과의 층수차이가 1/3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주거동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획일적 경관과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동 형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동형태를 차별화하여 주동형식을 다양화한다. 2.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한다. - 주동은 판상형, 탑상형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의 제시된 혼합유형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동형태를 차별화하여 주동형식을 다양화한다. 2.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한다. ○ 발코니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발코니에 의한 단조로운 입면형성을 지양하고 발코니를 활용한 다양한 입면 계획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조로운 입면 형성을 지양하고 배치, 형태, 색채 등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 ○ 필로티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 폐쇄감 해소 및 통경 확보, 보행통로 연결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로티를 조성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동의 전용면적이 60㎡ 이상이고, 한 층에 연속되는 호수가 4호 이상인 경우 4호마다 1개소씩 필로티 설치를 권장한다. 2. 공원, 하천, 보행자전용도로, 공지, 완충녹지와 면한 1층부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로티구조를 권장한다. 3. 필로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방향은 시행지침 ‘제1편 제11조 제6항 필로티 구조’에 따른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변을 향하여 측벽이 배치될 경우 단조로운 경관 형성의 방지 및 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개념에 따라 창호설치를 권장한다. - 하천변 공동주택블록은 하천 수면으로의 빛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배치, 저반사형 유리창 사용 또는 맹금류 모양의 실루엣(bird saver)을 유리에 붙이거나 조류 충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세대 내에 외기로 면하는 창호는 이중창 및 기밀성 창호를 권장한다. - 건설업체명, 브랜드명, 심볼, 로고 등은 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입구 시설물에만 문자 조각 형태로 명기할 수 있다. - 옥상 물탱크나 냉난방 시설, 안테나 등의 부속시설 설치 시에는 외부로의 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다양한 형태의 지붕이 가능하도록 하되 비상시 최상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되(물매 1:3 이상), 최상층은 다락 설치를 권장한다. - 옥탑높이를 최대한 낮추며, 옥탑부의 입면을 주동의 입면과 차별화하여 디자인한다.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이하가 되도록 하며, 담장 재료는 투시형 재질,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또는 자연재료 등을 사용한다. -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별표1] 공동주택용지 주택의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블록명	주택규모 (전용면적)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총계		150,439	3,212	-	-	-	-	
A-1BL	60㎡이하	20,953	748	56	25	30% 이하	200% 이하	통합공공임대
B-1BL	60~85㎡	31,018	563	110	25	30% 이하	200% 이하	민간분양
S-1BL	소계	45,629	857	-	-	30% 이하	190%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10,860	257	80	25			
	60~85㎡	34,769	600	110	25			
S-2BL	소계	19,605	387	-	-	30% 이하	200%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4,666	116	80	25			
	60~85㎡	14,939	271	110	25			
S-3BL	소계	33,234	657	-	-	30% 이하	200%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7,910	197	80	25			
	60~85㎡	25,324	460	110	25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99.0m이하로 하여야 하며, 건축 관련 인허가 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초과할 경우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야 함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D	D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천시 건축조례」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건축물의 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 지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계단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옥상의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 등)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으로 계획시 “시행지침 제Ⅱ편 제1장 제6조 제3항”의 기준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지붕을 평사지붕으로 계획시 “시행지침 제Ⅱ편 제1장 제6조 제4항”의 기준을 따른다. -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외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높이차 등 지형상 여건으로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0.8미터 이하의 화목류의 생울타리 및 자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주상복합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M	M-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주거외 용도의 연면적의 합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으로 함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25층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규모 및 세대수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과 보행활성화가 필요한 구간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한다. -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거이외 용도의 건축물의 배치는 건축한계선을 따르며, 그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바람통로와 주요 조망요소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4편 제2장 제4조 제2항 제2호’의 <표IV-2-4>에 준하여 통경축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상복합용지에 배치되는 모든 주거동은 「건축법」 제61조 및 「포천시 건축조례」 제36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준용하여 일조를 확보한다. ○ 건축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천시 건축조례」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벽면지정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지정선의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외벽면이 건축지정선 길이의 60퍼센트 이상 접하여야 한다. - 다만, 건축물의 입면특화를 위하여 50센티미터 이내에서 창호, 출입문 등 개구부를 제외한 기둥 및 벽체의 돌출 및 함입을 허용한다. ○ 층수제한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층수 제한구간’을 지정한다. - 층수제한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층수 이하로 배치하여야 하며,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따르도록 한다. - 국도43호선과 접한 주상복합용지의 층수제한구간에 비주거동 배치 등을 통해 공해 및 소음 등으로부터 주거기능 보호를 강구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p>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거외 용도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5m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p>○ 지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상복합시설의 지붕형태는 다양한 형태의 지붕이 가능하도록 하되 비상시 최상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되(물매 1:3 이상), 최상층은 다락 설치를 권장한다. - 옥탑높이를 최대한 낮추며, 옥탑부의 입면을 주동의 입면과 차별화하여 디자인 한다. <p>○ 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이하가 되도록 하며, 담장 재료는 투시형 재질,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또는 자연재료 등을 사용한다. -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별표2] 주상복합용지 주택의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블록명	주택규모 (전용면적)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총계		25,805	492	-	-	-	-	
M-1BL	60~85㎡	25,805	492	110	25	70% 이하	300% 이하	민간분양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99.0m이하로 하여야 하며, 건축 관련 인허가 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초과할 경우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야 함

마) 준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F	F1	용도 허용용도	<p>○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담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천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1.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를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반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 ~ 4.5m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등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계단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옥상의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 등)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외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바)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G	G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천시 건축조례」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 ~ 4.5m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 지붕 등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계단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1.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옥상의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 등)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외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H	H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의 연면적의 합계는 전체 연면적의 40%이하)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천시 건축조례」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1.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반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 ~ 4.5m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 지붕 등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계단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1.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옥상의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 등)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외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C	C1 C2 C3 C4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천시 건축조례」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 ~ 4.5m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 지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계단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옥상의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 등)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외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 공공시설용지

○ 교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E	E1 E2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초등학교 ○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
			E2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 6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환경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에 따라 교사동을 충분히 이격하여 소음 등으로부터 학교환경을 보호한다. - 인접한 공동주택 및 공원 등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건축 및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천시 건축조례」를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보행자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공동주택단지와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해야 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여 경사로 진입부를 조성한다. ○ 지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계단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옥상의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 등)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휴게 및 녹지공간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외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등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담장 설치가 가능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치원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2.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담장의 재료 및 색상, 무늬는 본 건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P	P1 P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교습소·직업훈련소, 옥외 철타피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 철타피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타사항	○ 주차장 외 용도의 설치 위치는 지하층 및 지상1, 2층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며 그 다음으로 연속하여 배치함
		규모	건폐율	○ 80%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축선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천시 건축조례」를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여 경사로 진입부를 조성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지상부 주차용도 층의 외벽은 차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와이어메시, 루버 등으로 차폐하도록 한다. - 단순 직선형 벽면이 형성되지 않도록 입면의 분절과 요철을 부여하고 건축물간 조화를 이룬 다양한 건축 입면 변화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건축물 옥상에 조경, 파고라 등 쉼터 설치를 권장한다. ○ 지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계단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옥상의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 등)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산·재생에너지 설비,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담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담장 설치가 가능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치원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2. 화관목류 생물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담장의 재료 및 색상, 무늬는 본 건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R1 R2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3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 당 1개소와, 그 폭원은 8m를 권장한다. 단, 1층 전체를 필로티구조로 조성하는 경우와 점포가 설치된 단독주택용지는 예외로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인접필지와 공동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포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필지 경계부는 담장설치를 불허함. 단, 필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의 표시는 가능하다.

나) 공동주택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B-1 S-1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3조 ①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제 I 편 제1장 제13조 ②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포천시 경관기본계획 경관계획지침」 상 내용을 준수하여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된 공지예 단지내 둘레길을 조성하여 내부보행동선과 원활한 연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S-2 S-3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에 설치한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 주택단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자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T’자 교차를 허용한다. - 사업 시행시기가 늦은 주택단지의 차량 출입구는 건너편 단지의 차량 출입구 맞은편에

위치	구분	계획내용
		<p>십자형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너편 단지 차량 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구 조성 후 출입구 이외의 구간은 인접한 기존 완충녹지와 연계되는 조경공간을 조성하여 녹지축 및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가로변 차량출입을 불허구간중 부대복리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의 진출입구 개설은 허용한다. 단, 부설주차장은 단지내 동선과 분리되어야 한다.
	단지 내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 주출입구 및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단지 내 보행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단지 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보행동선은 부대복리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단지 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차량동선과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여야 한다. - 출입을 위한 차량동선과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 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포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하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자전거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단지 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녹지는 인근 공원 및 녹지를 고려하여 조경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연결녹지와 연접한 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연결녹지의 연접부에 설치하며, 연결녹지와 연계시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심의시 검토 받아 식재를 한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이 규정하는 일부 내용이 제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교육환경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 본 계획과 관련하여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D1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3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연접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3m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0.9m 이하로 조성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포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여야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한다.
	자전거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라) 주상복합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M-1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제 I 편 제1장 제13조 ①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제 I 편 제1장 제13조 ②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천시 경관기본계획 경관계획지침」 상 내용을 준수하여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된 공지에 단지내 들레길을 조성하여 내부보행동선과 원활한 연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에 설치한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 주택단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자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T’자 교차를 허용한다. - 사업 시행시기가 늦은 주택단지의 차량 출입구는 건너편 단지의 차량 출입구 맞은편에 십자형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너편 단지 차량 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단지 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차량동선과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여야 한다. - 출입을 위한 차량동선과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거외 용도의 시설과 주거용도의 시설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포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 주상복합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외부 노출이 없는 건물 매립형에 한해 허용한다. - 주상복합용지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블록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외 용도의 법적 주차대수는 9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의 평탄부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상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2. 폭 1m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이상, 수관폭 1.5m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m²당 0.1분을 식재하여야 한다. 3.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으며,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이하가 되도록 한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4.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자전거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상복합용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단지 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녹지는 인근 공원 및 녹지를 고려하여 조경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연결녹지와 연결한 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연결녹지의 연결부에 설치하며, 연결녹지와 연계시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심의시 검토 받아 식재를 한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이 규정하는 일부 내용이 제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교육환경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 본 계획과 관련하여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주거용도 시설의 경우 제2장 공동주택용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마) 준주거시설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F1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로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3조 ①항(전면 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3조 ②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연결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3m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0.9m 이하로 조성하여 운전자의

위치	구분	계획내용
		<p>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포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한다. - 인접획지와 합필할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자전거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바) 업무시설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는 건축관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로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3조 ①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3조 ②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G1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연결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3m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0.9m 이하로 조성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포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한다. - 인접획지와 합필할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자전거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사) 도시지원시설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HI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로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3조 ①항(전면 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3조 ②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연접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3m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0.9m 이하로 조성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포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한다. - 인접획지와 합필할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자전거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아) 상업시설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로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3조 ①항(전면 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3조 ②항(공개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C1 C2 C3 C4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연접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3m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0.9m 이하로 조성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포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여야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한다. - 인접획지와 합필할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자전거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자) 공공시설용지

○ 교육시설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E1 E2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3조 ①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대지경계부는 주변지역과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보행쉽터를 형성하도록 권장한다. - 근린공원변 시설의 외부공간은 공원과 동일한 식재를 하는 등 공원과 일체화된 공간으로 조성한다.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포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여야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한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자전거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P1 P2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3조 ①항(전면공지)’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대지경계부는 주변지역과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보행쉽터를 형성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차량 진·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포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한다. - 주차장용지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시 자중식 주차로 하여야 하며, 카리프트 등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불가한다. - 주차장용지내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의 보행안전성과 국도 43호선변 보행가로경관 확보를 위해 주차공간 및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지내 전체 주차대수의 50%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주차장용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1층에 확보하고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외관의 경우 가로·야간 미관을 고려한 마감재를 사용하고, 주변 상업시설과

위치	구분	계획내용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전거 주차장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용적률)의 30%미만 이어야 한다.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지구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주)대륜이엔에스와 협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

다. 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 검토기준 :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39호)
- 위 검토기준에 의거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구분	사업지구	검토기준	검토결과
최대열부하(Gcal/h)	23.6	30	부적합
열사용량(Gcal/년)	50,218	45,000	적합
열밀도(Gcal/km ² .h)	61.7	30	적합

주1)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39호)

주2) 열밀도는 최대 열부하를 개발면적(km²)으로 나눈값임

3. 방재계획

가. 하천재해

1) 하천재해

- 개발로 인한 지방하천 포천천의 유입 홍수량 증가분을 사업지구내 영구저류지 설치를 통해 저감하고 하천수위를 고려한 단지계획고 설정

나. 내수재해

1)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 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2)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을 저감하고, 강우 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 유도

3) 재해저류지의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의 저류지 설치
- 화재,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완충공간 및 방재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도록 계획에 반영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가. 편입 토지조서 : [붙임2]

나. 토지취득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100%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1)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

구분	전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포천시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계	107	84,370	60	65,842	1	65	3	12,362	6	1,613	37	4,488
구거	9	14,769	6	2,407	-	-	3	12,362	-	-	-	-
답	41	5,812	18	2,566	-	-	-	-	-	-	23	3,246
대	3	655	2	162	-	-	-	-	1	493	-	-
도로	21	3,520	10	2,629	-	-	-	-	-	-	11	891
임야	2	745	1	464	-	-	-	-	-	-	1	281
잡종지	-	-	-	-	-	-	-	-	-	-	-	-
진	8	270	5	135	1	65	-	-	-	-	2	70
제방	10	2,687	5	1,567	-	-	-	-	5	1,120	-	-
하천	13	55,912	13	55,912	-	-	-	-	-	-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	편입	
	계	필지수 60개		65,842	65,842	
1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6-21	도	8	8	국토교통부
2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6-30	대	86	86	국토교통부
3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8-9	임	464	464	국토교통부
4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9-3	답	1,792	1,792	국토교통부
5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9-4	답	52	52	국토교통부
6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9-5	답	2	2	국토교통부
7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9-6	답	10	10	국토교통부
8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9-7	답	8	8	국토교통부
9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23-13	도	39	39	국토교통부
10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23-8	대	76	76	국토교통부
11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5-2	답	13	13	국토교통부
12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5-3	답	6	6	국토교통부
13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5-5	답	1	1	국토교통부
14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6-11	답	1	1	국토교통부
15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6-6	답	14	14	국토교통부
16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6-7	답	10	10	국토교통부
17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6-8	답	24	24	국토교통부
18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7-2	전	44	44	국토교통부
19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8-13	전	6	6	국토교통부
20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8-14	전	4	4	국토교통부
21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8-17	전	5	5	국토교통부
22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8-16	전	76	76	국토교통부
23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3-23	답	9	9	국토교통부
24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3-25	천	5	5	국토교통부
25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3-26	답	48	48	국토교통부
26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3-33	답	5	5	국토교통부
27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5-16	답	54	54	국토교통부
28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5-23	답	4	4	국토교통부
29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1-168	천	45	45	국토교통부
30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1-149	천	15,957	15,957	국토교통부
31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1-169	구	23	23	국토교통부
32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1-170	구	6	6	국토교통부
33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1-151	구	2,045	2,045	국토교통부
34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1-153	천	382	382	국토교통부
35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1-28	계	34	34	국토교통부
36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1-164	천	2,425	2,425	국토교통부
37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1-165	천	5,719	5,719	국토교통부
38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1-166	천	3,400	3,400	국토교통부
39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613-41	천	692	692	국토교통부
40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613-39	계	490	490	국토교통부
41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781-151	천	151	151	국토교통부
42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781-152	천	1,363	1,363	국토교통부
43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781-153	천	567	567	국토교통부
44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781-154	천	35	35	국토교통부
45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03	구	136	136	국토교통부
46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27	도	1,200	1,200	국토교통부
47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39	도	272	272	국토교통부
48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39-2	도	16	16	국토교통부
49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43-20	답	513	513	국토교통부
50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48-19	도	278	278	국토교통부
51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48-34	도	268	268	국토교통부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	편입	
52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48-40	구	132	132	국토교통부
53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48-44	도	248	248	국토교통부
54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48-80	구	65	65	국토교통부
55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48-8	도	284	284	국토교통부
56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87-14	천	25,171	25,171	국토교통부
57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87-16	채	73	73	국토교통부
58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87-3	채	770	770	국토교통부
59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87-4	채	200	200	국토교통부
60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90-1	도	16	16	국토교통부

나) 기획재정부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	편입	
계		필지수 1개		65	65	
1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08-1	전	65	65	기획재정부

다) 농림축산식품부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	편입	
계		필지수 3개		12,362	12,362	
1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93	구	820	820	농림축산식품부
2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28-2	구	11,522	11,522	농림축산식품부
3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28-3	구	20	20	농림축산식품부

라) 경기도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	편입	
계		필지수 6개		1,613	1,613	
1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323-6	채	69	69	경기도
2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09-10	채	187	187	경기도
3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09-11	채	27	27	경기도
4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09-7	채	26	26	경기도
5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09-8	채	811	811	경기도
6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09-9	대	493	493	경기도

마) 포천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	편입	
계		필지수 37개		4,488	4,488	
1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6-34	도	27	27	포천시
2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6-22	답	101	101	포천시
3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6-31	답	133	133	포천시
4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8-10	임	281	281	포천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	편입	
5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64-7	답	21	21	포천시
6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0-3	도	209	209	포천시
7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0-4	도	2	2	포천시
8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2-7	도	28	28	포천시
9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3-20	도	34	34	포천시
10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79-8	전	40	40	포천시
11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79-9	전	30	30	포천시
12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83-4	답	228	228	포천시
13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96-1	답	339	339	포천시
14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99-3	답	21	21	포천시
15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04-1	답	337	337	포천시
16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06-3	답	69	69	포천시
17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06-4	답	83	83	포천시
18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07-1	답	115	115	포천시
19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10-3	답	85	85	포천시
20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10-2	답	85	85	포천시
21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17-1	답	20	20	포천시
22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18-1	답	60	60	포천시
23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21-9	도	7	7	포천시
24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21-10	답	1	1	포천시
25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21-7	답	126	126	포천시
26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29-1	답	551	551	포천시
27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29-2	답	61	61	포천시
28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29-3	답	101	101	포천시
29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38-1	도	10	10	포천시
30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38-6	도	82	82	포천시
31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40-1	답	354	354	포천시
32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43-19	답	38	38	포천시
33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45-1	답	232	232	포천시
34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48-81	도	113	113	포천시
35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48-69	도	3	3	포천시
36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48-70	도	376	376	포천시
37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48-77	답	85	85	포천시

3) 대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시설의 구분	면 적 (m ²)	비 고
계	153,303.7	-
도 로	63,925.7	- 14개 노선(보행자도로 4개 노선 포함) - 중복면적(하천:3,909m ²) 제외
공 원	10,555	- 근린공원 1개소
유수지	6,010	- 1개소
녹 지	27,530	- 15개소(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11개소)
하 천	45,283	- 지방하천 1개소(포천천)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1) 시행할 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직무대행 이 정 관

2) 시행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시행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포천시장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m ²)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시기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2,707	12	이주주택지 대상자	수의계약	기준면적 이하 : 이주주택지 공급단가 기준면적 초과분 : 감정평가액	지구 계획 승인 후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실수요자	주거 전용 점포 겸용	추첨		감정평가액							
	공동 주택	98,468	3	실수요자	자격제한	자격제한		감정평가액							
									공공 지원 민간 임대 공공 임대	60m ² 이하	20,953	1	사업시행자	자체사용	조성원가60%
										분양	60~ 85m ²	31,018	1	실수요자 공모에 의한 당선자	추첨 수의계약
									근린생활시설		2,819	4	생활대책대상자 보상금예치자 실수요자	수의계약 제한경쟁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낙찰가격 낙찰가격
	기반 시설 용지	유치원	2,68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주차장	2,432	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판매 업무 시설 용지	준주거용지	6,564	5	국가·지자체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쟁입찰	조성원가 낙찰가격									
	상업시설	12,787	6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시설	8,928	2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상복합시설	25,805	1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낙찰가격									
도시지원시설용지							3,098	1	국가·지자체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쟁입찰	조성원가 낙찰가격				
합 계		218,259	39	-	-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이주주택지대상자 및 존치대상자 공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에 의해 공급

※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붙임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공유지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읍/면	리			공부면적	권입면적			성명	주소		
기정	1	소흘읍	송우리	116-14	도	347	27	포천시					
변경	1	소흘읍	송우리	116-34	도	27	27	포천시					
기정	2	소흘읍	송우리	116-15	대	289	289	이**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				
기정	3	소흘읍	송우리	116-19	대	106	106	이**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	1/2			
기정	4	소흘읍	송우리	116-21	도	8	8	국토교통부					
기정	5	소흘읍	송우리	116-22	답	101	101	포천시					
기정	6	소흘읍	송우리	116-30	대	86	86	국토교통부					
기정	7	소흘읍	송우리	116-31	답	133	133	포천시					
기정	8	소흘읍	송우리	118-3	임	3,030	3,030	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	1/8			
								한**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	1/8	이**	대구시 동구 화랑로100길 **	강제경매
								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1/8			
								한**	베르멜라 **번지 수도 브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1/8			
								송**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	1/8			
								송**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1/8			
								송**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1/8			
변경	8	소흘읍	송우리	118-3	임	3,030	3,030	송**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91번길 **	1/8			
								송**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	1/8			
								송**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	1/8	포*****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송**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1/8	포*****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송**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1/8	포*****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	1/8			
								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8			
기정	9	소흘읍	송우리	118-5	임	315	276	포천시					
변경	9	소흘읍	송우리	118-10	임	281	281	포천시					
기정	10	소흘읍	송우리	118-6	임	631	631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	3/4	농*****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	근저당권 지상권
								이**	의정부시 민락동 ***-*	1/4	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	근저당권
기정	11	소흘읍	송우리	118-7	임	53	53	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	1/8			
								한**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	1/8			
								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1/8			
								한**	베르멜라 **번지 수도 브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1/8			
								송**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 까지마을	1/8			
								송**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상림빌라다-***	1/8			
								송**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문정시영	1/8			
변경	11	소흘읍	송우리	118-7	임	53	53	송**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91번길 **	1/8			
								송**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	1/8			
								송**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	1/8	포*****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송**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1/8	포*****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송**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1/8	포*****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	1/8			
								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8			
기정	12	소흘읍	송우리	118-9	임	464	464	국토교통부					
기정	13	소흘읍	송우리	119	답	452	452	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	1/8			
								한**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7길 ***-*	1/8	이**	대구시 동구 화랑로100길 **	강제경매
								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1/8			
								한**	베르멜라 **번지 수도 브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1/8			
								송**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	1/8			
								송**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1/8			
								송**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1/8			
기정	13	소흘읍	송우리	119	답	452	452	송**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91번길 **	1/8			
								송**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	1/8			
								송**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	1/8	포*****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기정	13	소흘읍	송우리	119	답	452	452	송**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1/8	포*****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송**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1/8	포*****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송**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1/8	포*****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공유지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	1/8			
								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8			
								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	1/8			
								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	1/8			
기정	14	소홀읍	송우리	119-2	답	962	962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	3/4	농**** ****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	근저당권 지상권
								이**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	1/4	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	근저당권
											김*	경기도 남양주시 전건읍 사릉로372번길 **	근저당권
변경	14	소홀읍	송우리	119-2	답	962	962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	3/4	농**** ****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	근저당권 지상권
								이**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	1/4	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	근저당권
											김*	경기도 남양주시 전건읍 사릉로372번길 **	근저당권
											농**** ****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	지상권
기정	15	소홀읍	송우리	119-3	답	1,792	1,792		국토교통부				
기정	16	소홀읍	송우리	119-4	답	52	52		국토교통부				
기정	17	소홀읍	송우리	119-5	답	2	2		국토교통부				
기정	18	소홀읍	송우리	119-6	답	10	10		국토교통부				
기정	19	소홀읍	송우리	119-7	답	8	8		국토교통부				
기정	20	소홀읍	송우리	121-6	답	16	16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기정	21	소홀읍	송우리	122-6	답	24	24	김**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				
기정	22	소홀읍	송우리	123-6	도	107	35		국토교통부				
변경	22	소홀읍	송우리	123-13	도	39	39		국토교통부				
기정	23	소홀읍	송우리	123-7	대	48	48	이**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				
기정	24	소홀읍	송우리	123-8	대	76	76		국토교통부				
기정	25	소홀읍	송우리	445	답	112	112	최**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				
기정	26	소홀읍	송우리	445-2	답	13	13		국토교통부				
기정	27	소홀읍	송우리	445-3	답	6	6		국토교통부				
기정	28	소홀읍	송우리	445-4	답	6	2		국토교통부				
변경	28	소홀읍	송우리	445-5	답	1	1		국토교통부				
기정	29	소홀읍	송우리	446-1	답	1,378	1,378	최**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				
기정	30	소홀읍	송우리	446-10	답	339	1		국토교통부				
변경	30	소홀읍	송우리	446-11	답	1	1		국토교통부				
기정	31	소홀읍	송우리	446-2	답	820	820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기정	32	소홀읍	송우리	446-5	답	597	597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기정	33	소홀읍	송우리	446-6	답	14	14		국토교통부				
기정	34	소홀읍	송우리	446-7	답	10	10		국토교통부				
기정	35	소홀읍	송우리	446-8	답	24	24		국토교통부				
기정	36	소홀읍	송우리	447	전	550	550	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81번길 ***	1/4			
								김**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	1/4			
								박**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	2/4	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	근저당권
기정	37	소홀읍	송우리	447-2	전	673	44		국토교통부				
변경	37	소홀읍	송우리	447-2	전	44	44		국토교통부				
기정	38	소홀읍	송우리	448-13	전	6	6		국토교통부				
기정	39	소홀읍	송우리	448-14	전	4	4		국토교통부				
기정	40	소홀읍	송우리	448-15	전	525	5		국토교통부				
변경	40	소홀읍	송우리	448-17	전	5	5		국토교통부				
기정	41	소홀읍	송우리	448-16	전	76	76		국토교통부				
기정	42	소홀읍	송우리	448-3	전	3,333	3,333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 *	1/2	포**** ****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586번길 *	근저당권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로 *-**	1/2			
기정	43	소홀읍	송우리	456-2	주	1	1	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				
기정	44	소홀읍	송우리	456-4	주	354	354	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				
기정	45	소홀읍	송우리	456-5	주	19	19	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				
기정	46	소홀읍	송우리	456-7	주	11	11	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				
								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	1/3			
								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자동 ***	1/3			
								윤**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	1/3			
변경	47	소홀읍	송우리	457-2	대	9	9	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	1/3			
								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	1/3			
								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자동 ***	1/3			
								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1/3			
기정	48	소홀읍	송우리	459-5	대	3	3	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자동 ***	1/3			
								윤**	서울시 중구 동호로10길 **	1/3			
변경	48	소홀읍	송우리	459-5	대	3	3	안**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방로279번길 ***	1/3	포****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9길 **	1/3			
								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	1/3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공유지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기정	49	소흘읍	송우리	460-3	대	78	78	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곡로 ***	1/3			
								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1/3			
								윤**	서울시 중구 동호로10길 **	1/3			
변경	49	소흘읍	송우리	460-3	대	78	78	안**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왕방로279번길 ***-***	1/3	포***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9길 **	1/3			
								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	1/3			
기정	50	소흘읍	송우리	461	주	1,471	1,471	주****	서울시 강남구 영등대로 ***				
기정	51	소흘읍	송우리	463	대	24	24	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곡로 ***	1/3			
								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1/3			
								윤**	서울시 중구 동호로10길 **	1/3			
변경	51	소흘읍	송우리	463	대	24	24	안**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왕방로279번길 ***-***	1/3	포***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9길 **	1/3			
								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	1/3			
기정	52	소흘읍	송우리	464	대	3,476	3,476	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1/3			
								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1/3			
								윤**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	1/3			
변경	52	소흘읍	송우리	464	대	3,476	3,476	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곡로 ***	1/9			
								안**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왕방로279번길 ***-***	1/9	포***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로9길 **	1/9			
기정	53	소흘읍	송우리	464-5	답	940	940	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9길 **	3/9			
								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	3/9			
								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1/3			
변경	53	소흘읍	송우리	464-5	답	940	940	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1/3			
								윤**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	1/3			
								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곡로 ***	1/9			
기정	54	소흘읍	송우리	464-6	도	10	10	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	1/9			
								안**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38번길 **	1/9			
								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	3/9			
변경	54	소흘읍	송우리	464-6	도	10	10	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3/9			
								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1/3			
								윤**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	1/3			
기정	55	소흘읍	송우리	464-7	답	21	21	포천시					
								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곡로 ***	1/3	주*** ****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	근저당권
								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	1/3	주*** ****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	근저당권
변경	56	소흘읍	송우리	464-8	대	4,105	4,105	윤**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69길 **	1/3			
								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곡로 ***	1/9	주*** ****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	근저당권
								안**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왕방로279번길 ***-***	1/9	주*** ****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	근저당권
기정	57	소흘읍	송우리	464-9	답	5	5	주****	서울시 강남구 영등대로 ***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변경	58	소흘읍	송우리	466	유	2,086	2,086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기정	59	소흘읍	송우리	467-1	유	1,640	1,640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변경	59	소흘읍	송우리	467-1	유	1,640	1,640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기정	60	소흘읍	송우리	467-2	유	605	605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변경	60	소흘읍	송우리	467-2	유	605	605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기정	61	소흘읍	송우리	468	유	5,117	5,117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1/2			
변경	61	소흘읍	송우리	468	유	5,117	5,117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국(포천세무서장)		근저당권
								최**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				
								최**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				
기정	62	소흘읍	송우리	469	전	2,569	2,569	최**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				
								최**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				
								최**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				
기정	63	소흘읍	송우리	469-1	전	7	7	최**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				
								최**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				
								최**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				
기정	64	소흘읍	송우리	470-1	전	3,134	3,134	임**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변경	65	소흘읍	송우리	470-2	전	2,198	2,198	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기정	66	소흘읍	송우리	470-3	전	3,063	3,063	박**	경기도 의왕시 원터윗길 **		의***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	근저당권 지상권
								박**	경기도 의왕시 원터윗길 **		의***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	근저당권 지상권
								박**	경기도 의왕시 원터윗길 **		의***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66	소흘읍	송우리	470-3	전	3,120	3,120	박**	경기도 의왕시 원터윗길 **		의***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	근저당권 지상권
								박**	경기도 의왕시 원터윗길 **		의***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	근저당권 지상권
								박**	경기도 의왕시 원터윗길 **		의***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67	소흘읍	송우리	470-4	전	56	56	임**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29번길 **				
								임**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29번길 **				
								임**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29번길 **				
기정	-	소흘읍	송우리	470-5	전	57	57	박**	경기도 의왕시 원터윗길 **		의***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	근저당권 지상권
								박**	경기도 의왕시 원터윗길 **		의***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	근저당권 지상권
								박**	경기도 의왕시 원터윗길 **		의***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	소흘읍	송우리	-	전	0	0	말소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70-3 합병 말소				
								말소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70-3 합병 말소				
								말소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70-3 합병 말소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공 유 지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기정	68	소흘읍	송우리	471	답	172	172	이** 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2길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2길 **	1/2 1/2			
변경	68	소흘읍	송우리	471	답	172	172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2길 **	1/2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근저당권
								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2길 **	1/2			
기정	69	소흘읍	송우리	472	답	1,154	1,154	이** 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2길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2길 **	1/2 1/2			
변경	69	소흘읍	송우리	472	답	1,154	1,154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2길 **	1/2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근저당권
								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2길 **	1/2			
기정	70	소흘읍	송우리	473	잡	2,480	2,480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2길 **		서*** ****	서울시 중랑구 중랑천로 **	근저당권
기정	71	소흘읍	송우리	473-1	답	5,137	5,137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2길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71	소흘읍	송우리	473-1	답	5,137	5,137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2길 **				
기정	72	소흘읍	송우리	474	전	2,016	2,016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기정	73	소흘읍	송우리	474-1	전	662	662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기정	74	소흘읍	송우리	475-1	전	1,650	1,650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포**** *****	경기도 포천시 구철초로 **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75	소흘읍	송우리	475-2	전	1,468	1,468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변경	75	소흘읍	송우리	475-2	전	1,468	1,468	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기정	76	소흘읍	송우리	475-3	전	215	215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2/7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3/7			
변경	76	소흘읍	송우리	475-3	전	215	215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2/7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3/7			
기정	77	소흘읍	송우리	476-1	답	853	853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변경	77	소흘읍	송우리	476-1	답	853	853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2/7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2/7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3/7			
기정	78	소흘읍	송우리	476-2	답	3,573	3,573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				
변경	78	소흘읍	송우리	476-2	답	3,573	3,573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2/7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2/7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3/7			
기정	79	소흘읍	송우리	476-3	답	3,700	3,700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변경	79	소흘읍	송우리	476-3	답	3,700	3,700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2/7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2/7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3/7			
기정	80	소흘읍	송우리	477	답	1,953	1,953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기정	81	소흘읍	송우리	477-1	답	3,908	3,908	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기정	82	소흘읍	송우리	478-1	답	2,241	2,241	이**	경기도 포천시 학동로 **		포**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변경	82	소흘읍	송우리	478-1	답	2,241	2,241	이**	경기도 포천시 학동로 **		포**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나길 **				근저당권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				근저당권
기정	83	소흘읍	송우리	478-2	답	3,445	3,445	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변경	83	소흘읍	송우리	478-2	답	3,445	3,445	백**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1/3			
								백**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	1/3			
								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63길 **	1/3			
기정	84	소흘읍	송우리	478-3	답	1,745	1,745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		농*** ****	서울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기정	85	소흘읍	송우리	478-4	답	1,779	1,779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변경	85	소흘읍	송우리	478-4	답	1,779	1,779	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				
기정	86	소흘읍	송우리	479-1	답	2,083	2,083	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변경	86	소흘읍	송우리	479-1	답	2,083	2,083	백**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1/3			
								백**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	1/3			
								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63길 **	1/3			
기정	87	소흘읍	송우리	479-2	전	842	842	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기정	88	소흘읍	송우리	479-3	답	4,185	4,185	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887번길				
기정	89	소흘읍	송우리	479-4	잡	2,700	2,700	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기정	90	소흘읍	송우리	480-2	대	2,122	2,122	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기정	91	소흘읍	송우리	480-3	도	209	209	포천시					
기정	92	소흘읍	송우리	480-4	도	2	2	포천시					
기정	93	소흘읍	송우리	480-5	답	183	183	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기정	94	소흘읍	송우리	480-6	주	885	885	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기정	95	소흘읍	송우리	481-3	답	873	873	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887번길				
기정	96	소흘읍	송우리	481-4	답	116	116	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기정	97	소흘읍	송우리	482-1	답	2,096	2,096	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기정	98	소흘읍	송우리	482-2	답	945	945	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기정	99	소흘읍	송우리	482-3	답	1,349	1,349	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기정	100	소흘읍	송우리	482-4	답	3,263	3,263	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기정	101	소흘읍	송우리	482-5	답	2,770	2,770	권**	충남 보령군 청북면 장은리 ***	2/12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지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읍/면	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	경기도 의정부시 가농동 ***-***	2/12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근저당권
								권**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3/12	의정부 세무서	부가가치세2과-5725	압류
								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	5/12			
변경	101	소흘읍	송우리	482-5	답	2,770	2,770	권**	경기도 의정부시 가농리135번길 **	2/12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근저당권
								권**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무시절길 **	2/12			
								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481번길 **	3/12			
기정	102	소흘읍	송우리	482-6	천	137	137	권**	충남 보령군 천북면 장은리 ***	27.5/137			
								권**	경기도 의정부시 가농동 ***-***	27.5/137			
								권**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30.25/137	의정부 세무서	부가가치세2과-5725	압류
변경	102	소흘읍	송우리	482-6	천	137	137	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	51.75/137			
								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	207/548			
								권**	경기도 의정부시 가농리135번길 **	110/548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근저당권
기정	103	소흘읍	송우리	482-7	도	28	28	포천시					
기정	104	소흘읍	송우리	483-1	답	2,489	2,489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				
기정	105	소흘읍	송우리	483-11	천	109	109	최**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신읍리 ***				
기정	106	소흘읍	송우리	483-12	천	173	173	최**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				
기정	107	소흘읍	송우리	483-16	도	73	73	최**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신읍리 ***				
기정	108	소흘읍	송우리	483-2	답	1,798	1,798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				
기정	109	소흘읍	송우리	483-20	도	34	34	포천시					
기정	110	소흘읍	송우리	483-22	답	11	11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				
기정	111	소흘읍	송우리	483-23	답	9	9	국토교통부					
기정	112	소흘읍	송우리	483-24	대	23	23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				
변경	112	소흘읍	송우리	483-24	대	23	23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근저당권	
기정	113	소흘읍	송우리	483-25	천	5	5	국토교통부					
기정	114	소흘읍	송우리	483-26	답	48	48	국토교통부					
기정	-	소흘읍	송우리	483-28	도	458	0	국토교통부					
변경	-	소흘읍	송우리	483-28	도	458	0	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제척				
기정	115	소흘읍	송우리	483-3	답	2,149	2,149	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아리 ***-*				
변경	115	소흘읍	송우리	483-3	답	2,149	2,149	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아리 ***-*	진***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116	소흘읍	송우리	483-30	답	15	5	국토교통부					
변경	116	소흘읍	송우리	483-33	답	5	5	국토교통부					
기정	-	소흘읍	송우리	483-32	천	14	1	국토교통부					
변경	-	소흘읍	송우리	483-32	천	14	0	국토교통부					
기정	117	소흘읍	송우리	483-4	답	2,407	2,407	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기정	118	소흘읍	송우리	483-6	전	3,802	3,802	최**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신읍리 ***	457/3802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1길 *-**	3345/ 3802			
기정	119	소흘읍	송우리	483-7	대	414	414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근저당권	
기정	120	소흘읍	송우리	483-8	대	2,200	2,200	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기정	121	소흘읍	송우리	484	답	1,008	1,008	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				
변경	121	소흘읍	송우리	484	전	1,008	1,008	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				
기정	122	소흘읍	송우리	484-1	답	1,008	1,008	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				
변경	122	소흘읍	송우리	484-1	전	1,008	1,008	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				
기정	123	소흘읍	송우리	484-2	답	1,488	1,488	김**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1길 ***				
변경	123	소흘읍	송우리	484-2	전	1,488	1,488	김**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1길 ***				
기정	124	소흘읍	송우리	484-3	답	1,283	1,283	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변경	124	소흘읍	송우리	484-3	전	1,283	1,283	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기정	125	소흘읍	송우리	485-16	답	54	54	국토교통부					
기정	126	소흘읍	송우리	485-17	답	856	856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50번길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근저당권	
변경	126	소흘읍	송우리	485-17	대	718	718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50번길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근저당권	
변경	127	소흘읍	송우리	485-26	답	60	60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50번길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근저당권	
변경	128	소흘읍	송우리	485-27	대	78	78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50번길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	근저당권	
기정	129	소흘읍	송우리	485-18	답	11	11	국토교통부					
변경	129	소흘읍	송우리	485-18	답	11	11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				
기정	-	소흘읍	송우리	485-19	답	21	21	국토교통부					
변경	-	소흘읍	송우리	-		0	0	말소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5-3 합병 말소				
기정	130	소흘읍	송우리	485-2	답	294	294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 **	6/10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	4/10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 지 소 유 자	공 유 지 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변경	130	소홀읍	송우리	485-2	대	2,171	2,171	김**	6/10	농***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김**		주***			
기정	131	소홀읍	송우리	485-23	답	4	4	국토교통부					
기정	132	소홀읍	송우리	485-24	답	827	827	이**	166/827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솔모루로50번길 **-***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솔모루로50번길 **-***	661/827		
변경	132	소홀읍	송우리	485-24	대	515	515	이**	166/827	소***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솔모루로50번길 **-***			
변경	133	소홀읍	송우리	485-28	답	126	126	이**	166/827	소***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솔모루로50번길 **-***			
변경	134	소홀읍	송우리	485-29	대	171	171	이**	166/827	소***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솔모루로50번길 **-***			
변경	135	소홀읍	송우리	485-30	대	15	15	이**	166/827	소***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솔모루로50번길 **-***			
기정	-	소홀읍	송우리	485-25	답	1,877	1,877	김**	6/10				
변경	-	소홀읍	송우리	485-25	답	0	0	말소	4/10				
기정	136	소홀읍	송우리	485-3	답	813	813	정**		농***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136	소홀읍	송우리	485-3	답	834	834	정**		농***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137	소홀읍	송우리	641-135	답	167	167	김**					
기정	138	소홀읍	송우리	641-146	천	168	45	국토교통부					
변경	138	소홀읍	송우리	641-168	천	45	45	국토교통부					
기정	139	소홀읍	송우리	641-149	천	15,957	15,957	국토교통부					
기정	140	소홀읍	송우리	641-150	구	473	29	국토교통부					
변경	140	소홀읍	송우리	641-169	구	23	23	국토교통부					
변경	141	소홀읍	송우리	641-170	구	6	6	국토교통부					
기정	142	소홀읍	송우리	641-151	구	2,045	2,045	국토교통부					
기정	-	소홀읍	송우리	641-152	천	1,493	1	국토교통부					
변경	-	소홀읍	송우리	641-152	천	1,493	0	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제척		
기정	143	소홀읍	송우리	641-153	천	382	382	국토교통부					
기정	144	소홀읍	송우리	641-156	잡	149	149	국토교통부					
변경	144	소홀읍	송우리	641-156	잡	149	149	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887번길 **		
기정	145	소홀읍	송우리	641-28	제	34	34	국토교통부					
기정	146	소홀읍	송우리	641-81	대	275	275	기획재정부					
변경	146	소홀읍	송우리	641-81	대	275	275	소*****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기정	147	소홀읍	송우리	641-95	천	6,074	2,543	국토교통부					
변경	147	소홀읍	송우리	641-164	천	2,425	2,425	국토교통부					
기정	148	소홀읍	송우리	641-98	천	5,753	5,718	국토교통부					
변경	148	소홀읍	송우리	641-165	천	5,719	5,719	국토교통부					
기정	149	소홀읍	송우리	641-99	천	4,556	3,402	국토교통부					
변경	149	소홀읍	송우리	641-166	천	3,400	3,400	국토교통부					
기정	150	소홀읍	이가팔리	323-1	제	271	68	경기도					
변경	150	소홀읍	이가팔리	323-6	제	69	69	경기도					
기정	151	소홀읍	이가팔리	613-10	천	1,901	651	국토교통부					
변경	151	소홀읍	이가팔리	613-41	천	692	692	국토교통부					
기정	152	소홀읍	이가팔리	613-4	제	9,621	514	국토교통부					
변경	152	소홀읍	이가팔리	613-39	제	490	490	국토교통부					
기정	153	소홀읍	이동교리	781-35	천	5,140	1,530	국토교통부					
변경	153	소홀읍	이동교리	781-151	천	151	151	국토교통부					
변경	154	소홀읍	이동교리	781-152	천	1,363	1,363	국토교통부					
기정	155	소홀읍	이동교리	781-36	천	7,747	598	국토교통부					
변경	155	소홀읍	이동교리	781-153	천	567	567	국토교통부					
변경	156	소홀읍	이동교리	781-154	천	35	35	국토교통부					
기정	157	소홀읍	초가팔리	276	답	3,521	2,516	이**		소***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157	소홀읍	초가팔리	276-1	답	2,493	2,493	이**		소***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158	소홀읍	초가팔리	277	답	582	582	이**		소***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159	소홀읍	초가팔리	278	답	2,863	2,863	전*****					
기정	160	소홀읍	초가팔리	279	답	985	985	전*****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공유지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읍/면	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기정	161	소흘읍	초가팔리	279-4	전	53	40	포천시						
변경	161	소흘읍	초가팔리	279-8	전	40	40	포천시						
기정	162	소흘읍	초가팔리	279-5	전	747	32	포천시						
변경	162	소흘읍	초가팔리	279-9	전	30	30	포천시						
기정	163	소흘읍	초가팔리	280	답	1,560	1,560	전*****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산**-*			
기정	164	소흘읍	초가팔리	281	답	704	704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기정	165	소흘읍	초가팔리	282	답	2,744	2,744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2길 **	포**** ****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1586번길 *	근저당권
기정	166	소흘읍	초가팔리	283	답	2,678	2,678	황**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기정	167	소흘읍	초가팔리	283-4	답	228	228	포천시						
기정	168	소흘읍	초가팔리	293	구	820	820	농림축산 식품부						
기정	169	소흘읍	초가팔리	294	공	2,365	1,749	백**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로 ***	포**** *****	경기도 포천시 구철초로 **	근저당권
변경	169	소흘읍	초가팔리	294-5	공	1,738	1,738	백**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로 ***	포**** *****	경기도 포천시 구철초로 **	근저당권
기정	170	소흘읍	초가팔리	295	답	1,425	1,425	신**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초가팔리 ***			
기정	171	소흘읍	초가팔리	296	답	7,774	7,774	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홍동 **			
기정	172	소흘읍	초가팔리	296-1	답	339	339	포천시						
기정	173	소흘읍	초가팔리	299	답	1,749	770	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3길 **			
변경	173	소흘읍	초가팔리	299-2	답	765	765	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3길 **			
기정	174	소흘읍	초가팔리	299-1	답	69	24	포천시						
변경	174	소흘읍	초가팔리	299-3	답	21	21	포천시						
기정	175	소흘읍	초가팔리	300	답	1,398	1,398	박**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3길 **	관**** ****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	근저당권
기정	176	소흘읍	초가팔리	301	답	1,888	1,888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곡로484번길 **			
기정	177	소흘읍	초가팔리	302	답	2,863	2,863	정**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기정	178	소흘읍	초가팔리	303	구	136	136	국토교통부						
기정	179	소흘읍	초가팔리	304	대	660	660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로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180	소흘읍	초가팔리	304-1	답	337	337	포천시						
기정	181	소흘읍	초가팔리	304-2	답	2,854	2,854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로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182	소흘읍	초가팔리	306-1	답	160	58	포천시						
변경	182	소흘읍	초가팔리	306-3	답	69	69	포천시						
기정	183	소흘읍	초가팔리	306-2	답	85	83	포천시						
변경	183	소흘읍	초가팔리	306-4	답	83	83	포천시						
기정	184	소흘읍	초가팔리	307-1	답	115	115	포천시						
기정	185	소흘읍	초가팔리	308	잡	233	233	윤** 권**		1/2 1/2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3길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			
기정	186	소흘읍	초가팔리	308-1	전	65	65	기획재정부						
기정	187	소흘읍	초가팔리	309	대	4,576	4,576	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동공벌리지 ***	3/7	최**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기***-	피보전권 리	
								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동공벌리지 ***	2/7	정**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근저당권	
								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동공벌리지 ***	2/7				
기정	188	소흘읍	초가팔리	309-1	잡	2,225	2,225	권**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1/2				
								윤**	서울시 중랑구 묵동 ****	1/2				
기정	189	소흘읍	초가팔리	309-10	제	187	187	경기도			주***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	근저당권	채무자 등**** ***
기정	190	소흘읍	초가팔리	309-11	제	27	27	경기도			주***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	근저당권	채무자 등**** ***
기정	191	소흘읍	초가팔리	309-12	제	33	33	원**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초가팔리 ***		국(의정부 세무서) 포천시		압류 압류	
기정	192	소흘읍	초가팔리	309-13	대	126	126	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동공벌리지 ***	3/7	정**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근저당권	
								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동공벌리지 ***	2/7				
								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동공벌리지 ***	2/7				
기정	193	소흘읍	초가팔리	309-14	대	10,360	10,360	권** 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서울시 중랑구 묵동 ****	1/2 1/2				
기정	194	소흘읍	초가팔리	309-15	도	123	123	권**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1/2				
								윤**	서울시 중랑구 묵동 ****	1/2				
기정	195	소흘읍	초가팔리	309-16	대	1,024	1,024	권**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1/2				
								윤**	서울시 중랑구 묵동 ****	1/2				
기정	196	소흘읍	초가팔리	309-17	도	36	36	권**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1/2				
								윤**	서울시 중랑구 묵동 ****	1/2				
기정	197	소흘읍	초가팔리	309-2	대	946	946	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율용상길 **					
기정	198	소흘읍	초가팔리	309-3	대	906	906	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3/7	정**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근저당권	
								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2/7				
								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2/7				
기정	199	소흘읍	초가팔리	309-4	대	577	577	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3/7	정**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근저당권	
								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2/7				
								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2/7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지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기정	200	소홀읍	초가팔리	309-5	대	875	875	권**	3/7	정**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근저당권		
								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기정	201	소홀읍	초가팔리	309-6	제	170	170	유*****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윗용상길 **					
기정	202	소홀읍	초가팔리	309-7	제	26	26	경기도		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	근저당권	채무자 동****	
기정	203	소홀읍	초가팔리	309-8	제	811	811	경기도		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	근저당권	채무자 동****	
기정	204	소홀읍	초가팔리	309-9	대	493	493	경기도		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	근저당권	채무자 동****	
기정	205	소홀읍	초가팔리	310	답	820	820	우**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윗용상1길 **	소****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기정	206	소홀읍	초가팔리	310-1	답	100	84	포천시						
변경	206	소홀읍	초가팔리	310-3	답	85	85	포천시						
기정	207	소홀읍	초가팔리	310-2	답	85	85	포천시						
기정	208	소홀읍	초가팔리	317-1	답	20	20	포천시						
기정	209	소홀읍	초가팔리	318-1	답	60	60	포천시						
기정	210	소홀읍	초가팔리	319	잡	1,322	1,322	김**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태봉로 ***	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	근저당권		
기정	211	소홀읍	초가팔리	319-1	공	1,387	1,387	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					
변경	211	소홀읍	초가팔리	319-1	공	1,387	1,387	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	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	근저당권		
기정	212	소홀읍	초가팔리	319-2	잡	581	581	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					
기정	213	소홀읍	초가팔리	319-3	도	45	45	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					
변경	213	소홀읍	초가팔리	319-3	도	45	45	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	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	근저당권		
기정	214	소홀읍	초가팔리	320	잡	2,383	2,383	삼*****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	주****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	근저당권		
기정	215	소홀읍	초가팔리	320-3	잡	2,113	2,113	삼*****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	주****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	근저당권		
기정	216	소홀읍	초가팔리	321	도	71	6	포천시						
변경	216	소홀읍	초가팔리	321-9	도	7	7	포천시						
기정	217	소홀읍	초가팔리	321-6	답	83	1	포천시						
변경	217	소홀읍	초가팔리	321-10	답	1	1	포천시						
기정	218	소홀읍	초가팔리	321-7	답	126	126	포천시						
기정	219	소홀읍	초가팔리	327	도	1,200	1,200	국토교통부						
기정	220	소홀읍	초가팔리	328	구	15,101	11,025.6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220	소홀읍	초가팔리	328-2	구	11,522	11,522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221	소홀읍	초가팔리	328-3	구	20	20	농림축산 식품부						
기정	222	소홀읍	초가팔리	329	답	663	663	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죽엽산로 101번길 **-**	농****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	근저당권 지상권	채무자 이**	
										농****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			
기정	223	소홀읍	초가팔리	329-1	답	551	551	포천시						
기정	224	소홀읍	초가팔리	329-2	답	61	61	포천시						
기정	225	소홀읍	초가팔리	329-3	답	101	101	포천시						
기정	226	소홀읍	초가팔리	330	답	1,053	1,053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로2길 **					
변경	226	소홀읍	초가팔리	330	답	1,049	1,049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로2길 **					
변경	227	소홀읍	초가팔리	330-2	답	4	4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로2길 **					
기정	228	소홀읍	초가팔리	331	답	1,952	1,952	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죽엽산로 101번길 **-**	농****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	근저당권 지상권	채무자 이**	
										농****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			
기정	229	소홀읍	초가팔리	331-2	전	1,952	1,952	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	553.5/ 1107				
								박**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	553.5/ 1107				
기정	230	소홀읍	초가팔리	333	답	879	879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					
기정	231	소홀읍	초가팔리	333-5	도	199	199	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호곡로484번길 **					
기정	232	소홀읍	초가팔리	333-6	도	195	195	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호곡로484번길 **					
기정	233	소홀읍	초가팔리	334	답	2,131	2,131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					
기정	234	소홀읍	초가팔리	334-4	도	77	77	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호곡로484번길 **					
변경	234	소홀읍	초가팔리	334-4	도	77	77	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호곡로484번길 **				중복 등기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					
기정	235	소홀읍	초가팔리	338	답	2,891	2,891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					
기정	236	소홀읍	초가팔리	338-1	도	10	10	포천시						
기정	237	소홀읍	초가팔리	338-5	도	247	247	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309912/ 836836	양주시	세무과 9524	압류	
								대*****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송우리 ****	34900/ 836836				
								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호곡로484번길 **	4920424/ 836836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지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읍/면	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변경	237	소홀읍	초가팔리	338-5	도	247	247	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77478/209209			
								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	8725/209209			
								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484번길 **	123006/209209			
기정	238	소홀읍	초가팔리	338-6	도	82	82	포천시					
기정	239	소홀읍	초가팔리	339	도	272	272	국토교통부					
기정	240	소홀읍	초가팔리	339-2	도	16	16	국토교통부					
기정	241	소홀읍	초가팔리	340	답	2,923	2,923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58번길 **	포****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근저당권	
기정	242	소홀읍	초가팔리	340-1	답	354	354	포천시					
기정	243	소홀읍	초가팔리	341	답	2,956	2,956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58번길 **	포****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근저당권	
기정	244	소홀읍	초가팔리	342	답	1,989	1,989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58번길 **	포****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근저당권	
기정	245	소홀읍	초가팔리	343	답	1,136	1,136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58번길 **	포****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근저당권	
기정	246	소홀읍	초가팔리	343-16	답	655	434	국토교통부					
변경	246	소홀읍	초가팔리	343-20	답	513	513	국토교통부					
기정	247	소홀읍	초가팔리	343-19	답	38	38	포천시					
기정	248	소홀읍	초가팔리	345	답	1,804	1,804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양****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249	소홀읍	초가팔리	345-1	답	232	232	포천시					
기정	250	소홀읍	초가팔리	346	답	1,041	1,041	무*****					
기정	251	소홀읍	초가팔리	347	답	1,412	1,412	무*****					
기정	252	소홀읍	초가팔리	348-10	답	448	443	정**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				
변경	252	소홀읍	초가팔리	348-10	답	443	443	정**	인천시 북구 삼곡동 ****-				
기정	253	소홀읍	초가팔리	348-11	답	2,674	2,674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	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근저당권	
기정	254	소홀읍	초가팔리	348-12	답	2,271	2,271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	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근저당권	
기정	255	소홀읍	초가팔리	348-13	창	754	754	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				
기정	256	소홀읍	초가팔리	348-14	답	1,702	1,702	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				
기정	257	소홀읍	초가팔리	348-15	답	985	985	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				
기정	258	소홀읍	초가팔리	348-16	답	2,149	2,149	양**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	주****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	근저당권	
기정	259	소홀읍	초가팔리	348-17	답	843	843	양**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				
기정	260	소홀읍	초가팔리	348-18	답	2,298	2,298	박**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길 **	주****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	근저당권	
기정	261	소홀읍	초가팔리	348-19	도	278	278	국토교통부					
기정	262	소홀읍	초가팔리	348-20	답	3,137	3,137	최**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이가팔리 ***				
기정	263	소홀읍	초가팔리	348-21	답	3,183	3,183	이**	경기도 의정부시 장교로78번길 **	1656/3183			
								이**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	1527/3183			
기정	264	소홀읍	초가팔리	348-22	답	3,124	3,124	남**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	1/2			
								남**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	1/2			
기정	265	소홀읍	초가팔리	348-23	답	1,078	1,078	남**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	1/2			
								남**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	1/2			
기정	266	소홀읍	초가팔리	348-24	답	132	132	최**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				
변경	266	소홀읍	초가팔리	348-24	답	132	132	최**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로127번길 **	영****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 **	근저당권	
기정	267	소홀읍	초가팔리	348-25	답	1,545	1,545	무*****					
기정	268	소홀읍	초가팔리	348-26	창	876	876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로1길 **	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근저당권	
기정	269	소홀읍	초가팔리	348-27	답	1,005	1,005	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흘로 ***	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근저당권	
기정	270	소홀읍	초가팔리	348-28	답	2,331	2,331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귀길 **-	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271	소홀읍	초가팔리	348-29	답	760	760	남**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				
기정	272	소홀읍	초가팔리	348-3	답	1,669	1,669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로1길 **	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검바위1길 **	폐보전 권리	
기정	273	소홀읍	초가팔리	348-30	답	952	952	남**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				
기정	274	소홀읍	초가팔리	348-31	답	2,169	2,169	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산**-				
기정	275	소홀읍	초가팔리	348-32	답	1,140	1,140	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산**-				
기정	276	소홀읍	초가팔리	348-33	답	1,924	1,924	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산**-				
기정	277	소홀읍	초가팔리	348-34	도	268	268	국토교통부					
기정	278	소홀읍	초가팔리	348-35	답	3,104	3,104	이**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	2/8			
								이**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	2/8			
								이**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1/8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1/8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1/8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1/8			
기정	279	소홀읍	초가팔리	348-36	답	565	565	이**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	2/8			
								이**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	2/8			
								이**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1/8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공 유 지 분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읍/면	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1/8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1/8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1/8			
기정	280	소홀읍	초가팔리	348-37	답	519	519	박**	서울시 양천구 목동 ***				
기정	281	소홀읍	초가팔리	348-38	답	2,109	2,109	박**	서울시 양천구 목동 ***				
기정	282	소홀읍	초가팔리	348-39	답	2,856	2,856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검바위길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282	소홀읍	초가팔리	348-39	답	2,856	2,856	김**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검바위길 ***-*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기정	283	소홀읍	초가팔리	348-4	답	516	516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1길 **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검바위1길 **	폐보전 권리	
변경	283	소홀읍	초가팔리	348-4	답	516	516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검바위1길 **	폐보전 권리	
기정	284	소홀읍	초가팔리	348-40	구	132	132	국토교통부					
기정	285	소홀읍	초가팔리	348-41	답	2,631	2,631	전*****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				
기정	286	소홀읍	초가팔리	348-42	답	744	744	이**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118번길 ***-*	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287	소홀읍	초가팔리	348-44	도	248	248	국토교통부					
기정	288	소홀읍	초가팔리	348-45	답	1,375	1,375	전*****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산**-*				
기정	289	소홀읍	초가팔리	348-46	답	1,626	1,626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검바위1길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지상권	
										전*****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	근저당권	
변경	289	소홀읍	초가팔리	348-46	답	1,626	1,626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검바위1길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290	소홀읍	초가팔리	348-47	답	3,028	3,028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검바위1길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지상권	
										전*****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	근저당권	
변경	290	소홀읍	초가팔리	348-47	답	3,028	3,028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검바위1길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지상권	
										정**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호국로429번길 **	근저당권	
기정	291	소홀읍	초가팔리	348-48	답	2,962	2,962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1길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기정	292	소홀읍	초가팔리	348-49	답	2,393	2,393	전*****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	포천시		압류	
변경	292	소홀읍	초가팔리	348-49	답	2,393	2,393	전*****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				
기정	293	소홀읍	초가팔리	348-5	답	2,602	2,602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1길 ***-*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검바위1길 **	폐보전 권리	
기정	294	소홀읍	초가팔리	348-53	구	383	58	국토교통부					
변경	294	소홀읍	초가팔리	348-80	구	65	65	국토교통부					
기정	295	소홀읍	초가팔리	348-6	답	678	678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1길 ***-*	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검바위1길 **	폐보전 권리	
기정	296	소홀읍	초가팔리	348-68	도	171	109	포천시					
변경	296	소홀읍	초가팔리	348-81	도	113	113	포천시					
기정	297	소홀읍	초가팔리	348-69	도	3	3	포천시					
기정	298	소홀읍	초가팔리	348-7	답	2,407	2,407	이**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포화로 ***				
기정	299	소홀읍	초가팔리	348-70	도	376	376	포천시					
기정	300	소홀읍	초가팔리	348-71	답	1,487	1,487	김**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봉술로2길 **				
기정	301	소홀읍	초가팔리	348-72	답	331	331	엄**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				
기정	302	소홀읍	초가팔리	348-73	답	167	167	정**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				
기정	303	소홀읍	초가팔리	348-74	답	744	744	정**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봉술로2길 **				
기정	304	소홀읍	초가팔리	348-75	답	340	340	전**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1길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305	소홀읍	초가팔리	348-76	답	529	529	김** 송**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	1/2	김** 송**	의정부시 용현동 **	근저당권
										1/2	송**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	근저당권
기정	306	소홀읍	초가팔리	348-77	답	85	85	포천시					
기정	307	소홀읍	초가팔리	348-78	창	301	301	엄**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소홀로 ***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	근저당권	
기정	308	소홀읍	초가팔리	348-8	도	284	284	국토교통부					
기정	309	소홀읍	초가팔리	348-9	답	3,091	3,091	정**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	포**** ****	경기도 포천시 신음동 ***-*	근저당권	
기정	310	소홀읍	초가팔리	387	천	35,527	25,026	국토교통부					
변경	310	소홀읍	초가팔리	387-14	천	25,171	25,171	국토교통부					
기정	311	소홀읍	초가팔리	387-2	제	117	66	국토교통부					
변경	311	소홀읍	초가팔리	387-16	제	73	73	국토교통부					
기정	312	소홀읍	초가팔리	387-3	제	770	770	국토교통부					
기정	313	소홀읍	초가팔리	387-4	제	200	200	국토교통부					
기정	314	소홀읍	초가팔리	390	도	283	15	국토교통부					
변경	314	소홀읍	초가팔리	390-1	도	16	16	국토교통부					
			계			384,818	384,818						